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 (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1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1월 11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조직과 인력의 축소개편에 따라 물품관리자의 관직을 재정비하고 '98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준칙(안)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조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직개편으로 기구 및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을 변경

· 회계과 → 총무과, 회계과장 → 총무과장

○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조정

· 동일 시·도 소요조회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 10백만원 미만의 물품

⇒ 동 취득가격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5. 검토보고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동일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물품취득 가격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일부조문중 도조직개편으로 물품관리의 부서명칭을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현행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직할시·도”를 “광역시·도”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9. 1. 21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도의 물품관리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일부조문중 “직할시·도(시·군 포함)” ⇒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로 자구수정
(안 제16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3항 제1호중 “직할시·도(시·군 포함)와”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직할시·도(시·군 포함)에”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동일 직할시·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p> <p>2. 동일 직할시·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p> <p>1. -----</p> <p>-----</p> <p>-----</p> <p>-----</p> <p>-----</p> <p>-----</p> <p>2. -----</p> <p>-----</p> <p>----- 물품취득가 격(장부가격 기준)이 5 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1. -----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p> <p>-----</p> <p>-----</p> <p>-----</p> <p>-----</p> <p>2. -----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p> <p>----- 물품취득가 격(장부가격 기준)이 5 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이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p>